

학습자료(산업안전보건교육등법정교육2)

■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의 발생

-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때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된다.

* 안전보건교육 면제 사업장의 기준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방송업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소매업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보건업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병원은 제외의 예외

* 과태료

- 1차 위반 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
- 2차 위반 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3차 위반 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5만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에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에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작업 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 재개
-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 작업 중지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세 가지: ①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②복잡/다양성, ③강행성/규정성

■ 2차시 소방안전교육

***연소의 3요소**

- 산소
- 점화원
- 가연물

***화재의 특성**

- 성장성
- 불안전성
-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소화의 원리**

- 타는 물질의 온도를 발화점 또는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면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냉각소화라 하며, 대표적인 냉각제는 물이다.
- 가연성 물질을 연소장소에서 제거하여 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방법을 제거소화라 하며, 고체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이 그 예이다.
- 가연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감시키는 소화방법을 질식소화라 하며, 포소화화제를 사용하여 거품으로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그 예이다.

***화재예방 대책**

-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 노후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한다.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근다.
-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 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기**

- 소화기는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소화기 분류**

- CO2 소화약제는 질식효과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 분말 소화제는 고체상태로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가스압으로 분출시켜 소화한다.
- 분말 소화약제는 가연성 액체의 표면화재, 전기화재, 일반화재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불쪽으로 접근한다.
-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쥐어야 한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

- 소화전으로 열고 호스를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한다.
- 소화전 밸브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 소화전함에 부착된 적색 기동스위치를 눌러야 기동한다.
-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한다.

***소화기의 설치 장소**

-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 사용 시 방출이 용이한 장소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의 장소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 화재 발생시 발화층보다 낮은 층으로 대피한다.
-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 사무실의 창문을 개방한다.
- 평소에 숙지한 피난경로 및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 휴대용 랜턴을 사용한다.

■ 3차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법률 제5조 2항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기본소생술

-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½이다.
-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해도 생존율에 큰 차이는 없다.
- 가슴 압박 교대 시 hand off time은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
- 제세동 쇼크를 시행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기도폐쇄

-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본다.
- 기도폐쇄로 판단되면 즉각적인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 복부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임산부나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가 아닌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시행한다.

*흉부압박

- 압박속도는 분당 최소 100~120회로 한다.
- 환자가 성인일때 압박깊이는 최소 5~6cm로 한다.
- 환자가 아동일때 압박깊이는 흉부전후직경의 최소 1/3 약 4~5cm로 한다.
- 환자가 신생아(1세 미만)일때 두 손가락으로 한다.

*심정지 환자 소생

-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성인의 생존 사슬에서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는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다.

*환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해야 할 행동

-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 할 경우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다. 현장이 안전함을 확인 한 후엔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 한 후, 의식이 없으면 즉시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 4차시 힘희롱 예방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의 발생 이유

-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

-조직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음

***정당한 전보발령**

- 기술혁신 및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인해 전보발령 한 경우
- 업무의 능률증진을 위해 전보발령 한 경우
-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내지 근로자간 인화를 위해 전보발령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폭력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
- 업무방해 행위

■ 5차시 산업재해보상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업무상 부상 등에 의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법 제52조).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요양이 끝난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 사례**

- 아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한 사고
-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가다가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외출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6차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측 장점**

- 세제혜택
- 수급권 강화
-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7차시 계절별 건강관리(봄)

***알레르기 질환의 일반적 관리**

- 페니실린 투여
- 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 면역요법
- 먼지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자주하고 카펫을 사용 자제

***결막염**

-결막염 발생 시 가급적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음, 눈의 건조를 예방하도록 하며, 눈의 결막염이 의심되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함

***춘곤증의 관리 방법**

-일반적인 관리로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커피, 음주, 흡연 자제하기, 규칙적인 식사 및 과식 줄이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 비타민 B1, C가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 8차시 계절별 건강관리(겨울)

***심뇌혈관질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 고혈압
- 당뇨
- 흡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수칙**

-심뇌혈관의 예방 수칙으로 6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스트레스 줄이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치아 건강 유지,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금연, 정기 건강 검진 등이 있습니다.

***한랭질환의 예방**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며,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한다. 실내 환경으로는 실내를 18~20℃ 정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따뜻한 옷을 입으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다.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며,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